

# 국방광역감시 특화연구센터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국방광역감시 특화연구센터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명칭)** 본 센터는 「방위산업청 지정 국방광역감시 특화연구센터(Global Surveillance Research Center, 약칭 GSRC)」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센터는 미래전장의 감시정찰정보력 증강을 위해 위성 기반의 ISR 기초기술을 획득하고 ISR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다. 국방광역감시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습득하고, 이 분야에 지속적인 산·학·연을 통한 연구개발이 진행되도록 연구 집단을 형성하고, 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감시정찰 정보체계의 자주화를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사업)**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 사업은 총 5개의 연구실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.

### <센터장>

- GS-01 : 국방광역감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

### <1연구실>

- GS-11 : 우주용 SOI 기반 전자부품의 우주방사선 영향 모델링 및 제작 기법 연구
- GS-12 : 우주 스마트 열제어기에 관한 연구
- GS-13 : 우주구조물의 진동제어에 관한 연구
- GS-14 : 위성영상 활용기술 연구

### <2연구실>

- GS-21 : 신속 대표적 관측 및 국지적 입체영상 획득을 위한 고기동 소형 위성의 형상 설계 및 시스템 구성 연구
- GS-22 : 위성간 상대거리 측정 기술 연구
- GS-23 : CMG 적용 고기동 소형위성의 정밀 자세제어 기법 연구
- GS-24 : 우주자산 근접조사/자율도킹/보호 기술 연구
- GS-25 : 고기동 소형위성 시스템 개념설계 및 비용평가 도구 개발과 우주 인증 규격서 및 제품보증 표준서 개발

### <3연구실>

- GS-31 : 차세대 소형·경량화 우주 광학 구조체 연구
- GS-32 : 위성 EO/IR 검보정 기법 연구

### <4연구실>

- GS-41 : 우주환경적용 경량화 안테나 연구
- GS-42 : SAR 검보정 기법 기술 연구
- GS-43 : 위성 SAR 탑재체 ECCM 기술 연구

<제5연구실> 국방광역감시 특화연구센터 기타 연구

**제4조 (소재)**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## 제 2 장 조직 및 구성

**제5조 (조직 및 구성)** ① 특화연구센터는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 책임을 갖는 센터장과 연구실 운영을 책임지는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한다.

② 특화연구센터는 주요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특화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는 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③ 특화연구센터 구성 인력 자격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장: 정교수급 및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잔여 재직기간이 9년 이상이며, 타 사업의 연구센터장을 겸직하지 않는 자.
2. 연구실장: 부교수급 및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단계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6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자.
3. 연구책임자: 조교수급 이상 및 선임연구원급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로 착수연도 기준으로 신규과제를 포함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사업 포함 3개 과제이상의 과제 책임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. 단, 과제 참여자로는 가능함.
4. 연구원 및 보조원: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. 단, 외국인의 경우 국과연이 정하는 별도 보안절차를 받아야 함.

**제6조 (센터장 및 연구실장 등의 교체)** ① 센터장의 교체는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심각한 건강상 문제와 면직 등 신분상의 변화로 센터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한다.

② 센터장 교체 건의는 센터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센터 설치기관장이 국방과학연구소(이하“국과연”이라고 한다)에 건의하고, 국과연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후 방위사업청에 건의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.

③ 신임 센터장은 센터운영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이 주관하여 센터참여 과제책임자 및 국과연 과제관리자가 모두 참여하는 절차에의해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확정한다. 단, 신임 센터장에대한 추천은 센터운영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 추천된 자중에서 선정한다.

④ 연구실장 및 과제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연구실장 및 과제책임자의 교체를 국과연에 건의하고, 국과연은 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. 단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충원 및 교체는 센터장이 승인

하며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.

**제7조 (하부조직)** 센터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가 호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- ① 제1연구실 : 기반 기술 연구실
- ② 제2연구실 : 고기동 제어 연구실
- ③ 제3연구실 : 광학 센서 연구실
- ④ 제4연구실 : 전자파 센서 연구실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① 각 특화연구센터는 센터 운영상의 주요 현안 및 문제해결, 예산집행의 관리 및 감독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

② 특화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 연구실장, 연구실 관리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한다. 필요시, 사업통제부서 담당자와 국과연 관리 부서의 담당자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재정 및 운영

**제9조 (특화연구센터 사업 예산 등)** ① 특화연구센터 연구개발비 지급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에 따른다.

② 특화연구센터 유치기관은 연구실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국과연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연구비중 특화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한다.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관리 협약서를 첨부하여야한다.

③ 사업통제부서장은 특화연구센터의 중간 및 단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예산을 조정 할 수 있으며, 특화연구센터장은 평가결과를 고려 센터 내 연구실단위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특화연구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년도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실내 세부과제별 예산조정안을 국과연으로 건의할 수 있으며, 국과연은 검토 및 승인 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결과 보고한다.

⑤ 특화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기초연구관리비를 편성 한다.

⑥ 특화연구센터관련 평가를 위한 예산은 국방기술품질원(이하 "기품질원"이라 한다) 예산으로 편성하며, 평가시 평가위원 평가비 및 경비를 일괄 지급한다.

### 제 4 장 성과평가 및 활용

**제10조 (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)**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센터가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
1. 중간평가: 단계(3년)별 중간 시점(연구 개시 후 1년 6개월 경과 시점)에서 운영성과 및 과제별 연구목표 달성도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.
2. 단계평가: 단계(3년)별 종료 시점(연구 개시 후 2년 6개월 경과 시점)에서 운영성과 및 과제별 연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며, 사업이 최종 종료되는 시점(6년 또는 9년)의 단계평가는 전체 단계동안의 운영성과, 목표달성도 및 국방연구개발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.

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종합·분석하여 센터 및 실별 평가결과와 성과에 따라 차기단계 예산은 물론 단계전환 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11조 (성과평가 수행절차)** ① 기품원은 방위사업청 평가지침을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.

② 성과평가별 평가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
1. 중간평가: 중간보고서 발표평가
2. 단계평가: 단계 최종보고서 발표평가

③ 중간평가는 평가의 효율성 재고는 물론 내실화를 위해 내부 전문 인력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평가의 효율성과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.

④ 단계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부 전문 인력 및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.

**제12조 (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)** ① 성과평가는 평가서에 의한 평가종합점수에 의거, 과제별 중간평가는 “정상추진”, “계획조정”, 또는 “과제중단”으로, 센터별 중간평가는 “정상추진”, 또는 “계획조정”으로 평가한다. 단계평가는 종합결과에 따라 “합격”, “불합격”으로 평가하며, “불합격”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.

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중간평가 및 단계 평가결과를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하여,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.

③ 국과연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효과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특화연구센터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특화연구센터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국과연은 센터 실사 후 센터 운영 관리 및 과제 실사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보고한다.

**제13조 (기술 확보 및 확인)**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무기체

계 분야별 기술확보방안에 따른 기술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목록 및 활용결과의 제출 및 관리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7조 2항을 따른다.

**제14조 (기술자료 등록 및 보관)**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등록 및 보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 1, 2항과 제648조, 1, 2항을 따른다. 다만 “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” 작성시 민수이전 가능여부를 명시하고, 민수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(기술개발성과의 활용)**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9조를 따른다.

## 제 5 장 기타 사항

**제16조(연구수행 중도 중단에 따른 제재)** ① 특화연구센터가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중단해야할 경우 6개월 전에 국과연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, 3개월전에 연구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획득 기술을 국과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 (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촉 등)** ① 특화연구센터는 필요시 해당 센터에 대한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방위사업청(방산진흥국장)에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전문연구기관 위촉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.

**제18조 (홈페이지 운영)** ① 특화연구센터 센터장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 연구원들의 정보 교환이 가능토록 구축/운영되어야하며, 연구관련 자료를 대외에 공개시 국과연과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19조 (보안대책)** ① 특화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안대책은 국방부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수행하여야한다.

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은 연구 시설 공개, 연구물 제공 및 대외 활동시 국과연 과제관리자에 사전 승인/보고할 책임을 지닌다. 또한, 외국인 연구원이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국과연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(단, 2012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)